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055

발의연월일: 2020. 7. 16.

발 의 자:심상정・류호정・강은미

이은주 · 배진교 · 장혜영

권인숙 • 박영순 • 윤미향

김형동 · 남인순 의원

(1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권 행사가 제한되는 토지소유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있음.

그런데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20년 이상 미집행되는 경우 시설결정의 효력이 사라져 해당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등이가능해지는 "도시공원일몰제"의 시행으로 인해, 도시의 자연환경 및경관 보호를 이유로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되고 있는 도시·군계획시설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음.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등에 있어 토지 소유자들의 사권이 지속적으로 제한될 것이 예상되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토지에 대한 조세지원 역시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에 도시·군계획시설로서 10년 이상 미집행된 토지가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토지 등에 대하여 재산세의 50%를 감면 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3항 신설).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 군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가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도시자연 공원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구역의 토지, 지상건축물, 「지방세 법」 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각각 그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제177조의2제1항제2호 중 "제84조제1항"을 "제84조제1항·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② (생 략)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	
	른 도시·군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가 같은 법 제38	
	조의2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	
	역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구역	
	의 토지, 지상건축물, 「지방세	
	법」 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	
	택(각각 그 해당 부분으로 한	
	정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u>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u>	
	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	
	는 세액을 면제한다.	
③ (생 략)	<u>④</u>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제한) ①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		
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		
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생략)
-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 조제1항, 제13조제3항, 제16 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 조제1호, 제29조, 제30조제3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제2항(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제57조의3제1항, 제62조, 제63조제2항·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제2항, 제77조제2항, 제82

1.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2
2
2
2
2
2
2
2
2

조, <u>제84</u> 조	<u> </u>	<u>항</u> , 제85조	의2제
1항제4호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u>제84조제1항·제3항</u>-----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